

2011년 영조물배상공제(물놀이시설) 가입 안내

I. 가입의 필요성

-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수영장 등으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면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어 회원의 재정적 안정과 민원 대응에 따른 행정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음

II. 가입대상

- 여름철 물놀이시설
○ 해수욕장, 수영장, 자연발생유원지 등

III. 공제회비 안내

- 해수욕장 (단위: 원)

보상한도	면적(20,000㎡)	면적(30,000㎡)	면적(50,000㎡)
대인 1인당 1억/1사고 3억 대물 1억	197,300	394,700	789,400

- 야외수영장 (단위: 원)

보상한도	면적(500㎡)	면적(1,000㎡)	면적(1,500㎡)
대인 1인당 1억/1사고 3억 대물 1억	881,300	1,762,600	2,643,900

- 자연발생유원지 (단위: 원)

보상한도	면적(10,000㎡)	면적(20,000㎡)	면적(30,000㎡)
대인 1인당 1억/1사고 3억 대물 1억	553,500	627,600	701,600

※ 가입기간 2011.06.25~08.31, 자기부담금 10만원 기준

IV. 보상하는 손해

- 가입한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주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**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**
- 영조물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및 용도에 수반하는 업무수행상의 과실
- ※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도, 그 원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하지 못 함.

VI. 가입절차

